

키르기스 국제대학교와 고신대학교 간의 학생교류에 관한 세부협약서

키르기스 국제대학교와 고신대학교(이하 '양 교'라고 한다)는 서명한 협정서를 토대로 학생교류에 대한 세부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체류기간)

교환학생의 체류(수학)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양 교의 협의로 체류기간을 수정할 수 있다.

제 2 조 (인원 및 대상)

학생교류의 인원은 양 교에서 각각 5명 이내로 하며, 대상은 학부 교환학생 3명, 언어연수생 2명으로 한다.

제 3 조 (자격)

학생교류에서 '교환학생'은 상대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의 지평을 폭 넓게 하는 교환학생으로 정의한다. 예외가 있을 경우 양 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호간 학점인정은 양 교가 별도의 실무적 세부협의를 갖는다.

제 4 조 (절차의 승인)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은 상대 대학 혹은 당국이 설정한 자격이 되어야 하고, 초청 대학이 최종적으로 이들의 입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조 (수학)

교환학생은 상대국에 도착 후 교육상담을 받고, 실무담당자의 안내에 따른다. 수강과목은 기초언어,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한다.

제 6 조 (성적처리)

초청 대학은 교류학생의 성적을 서류로 평가하며, 상대 대학은 이 성적평가를 학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학비 및 기타경비)

학부 교환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학비를 납부하고, 초청 대학에서 학비를 면제받는다. 기숙사는 상호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언어연수생은 본인이 학비를 내고 기숙사비는 상호 면제한다. 학비와 기숙사비 외의 문화체험비, 교재비, 생활비, 보험료 등의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의 요구사항)

교환학생은 초청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환학생 비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환학생은 상대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담당교수 혹은 대학당국에 자신의 위치를 항상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9 조 (교환학생 관리)

양 교는 학생교류에 대해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며, 양 교 교류의 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상대 대학에 통보한다.

제 10 조 (변경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3 년으로 하며, 서명과 즉시 발효된다. 협약을 끝내기를 원할 경우 최소 6 개월 전 상대 대학에 서면 통보하면 협약의 효력이 만료된다.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이 협약은 자동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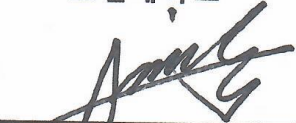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키르키즈국제대학


총 장 유 민

고신대학교


총 장 안 민